

1. 개정이유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광학기능사 등 3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하고, 설비보전기능사 등 3개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통합하며,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축로기능사 등 82개 자격 종목의 명칭, 시험과목 등을 산업현장의 직무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방식 다양화(안 제30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 1)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자파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

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 및 통합(안 별표 2, 별표 8, 별표 14 등)

- 1) 광학기능사, 원형기능사 및 광고도장기능사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폐지함.
- 2)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직무 유사성 등 고려하여 설비보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및 공유압기능사를 설비보전기능사로 통합함.

다.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 변경 등(안 별표 2, 별표 7, 별표 8, 별표 9, 별표 19 등)

- 1) 웹디자인기능사를 웹디자인개발기능사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종목의 필기 시험과목을 디자인일반, 인터넷일

반, 웹그래픽디자인에서 웹디자인 구현, 웹페이지 제작으로 변경하며, 실기 시험과목을 웹디자인 실무 작업에서 웹디자인 실무로 변경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및 시험과목을 변경함.

2) 인쇄기사, 인쇄산업기사 및 인쇄기능사의 소관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함.

라.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및 시험위원 자격 명확화(안 별표 11의4, 별표 16)

1) 서비스 분야 임상심리사 응시자격 중 실무경력의 경우 학위취득 전 실무경력과 실습수련 기간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응시자격에 명시

2) 출제위원 등 시험위원 자격 중 실무경력의 경우 학위 또는 자격 취득 전에 실무에서 쌓은 경력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험위원 자격에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22.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사진 1장”을 “사진 1장(전자파일 형태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의 직무분야(26)의 기술·기능 분야(51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기능 분야(506)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84	29	117	119	157

별표 2의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3/13)의 082 디자인(1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82 디자인(11)			서비스· 경험 디자인						
			시각 디자인	시각 디자인					
					웹디자인 개발				
	제품 디자인		제품 디자인	제품 디자인					
					제품응용 모델링				
			컬러 리스트	컬러 리스트					
					컴퓨터 그래픽				

별표 2의 직무분야(26)란 중 “16 기계(7/77)”를 “16 기계(7/75)”로 하고, 같은 표의 16 기계(7/75)[중전의 16 기계(7/77)]의 161 기계제작(13)란,

162 기계장비설비·설치(31)란 및 164 조선(7)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61 기계제작 (12)	기계	기계 가공		컴퓨터 응용 가공	컴퓨터 응용 선반				
					컴퓨터 응용 밀링				
				기계 조립	기계가 공조립				
			일반 기계						
				기계 설계	전산응 용기계 제도				
				정밀 측정	정밀 측정				

162 기계장비설비· 설치(30)	건설 기계		건설기 계설비	건설기 계설비					
		건설기 계정비	건설기 계정비	건설기 계정비	건설기 계정비				
			케도장 비정비	케도장 비정비	케도장 비정비				
	공조냉 동기계		공조냉 동기계	공조냉 동기계	공조냉 동기계				
			설비 보전	설비 보전	설비 보전				
	산업기 계설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전자부 품장착	전자부 품장착				
			농업 기계	농업 기계					
					농기계 정비				
				생산 자동화	생산 자동화				
					반도체 설비 보전				
					타워크 레인 설치· 해체				

164 조선(7)					선박 기관 정비				
					선체 건조				
					선체 설계				
	조선			조선					
			조선 선체						
			조선 의장						

별표 2의 직무분야(26)란 중 “17 재료(5/39)”를 “17 재료(5/37)”로 하고,
같은 표의 17 재료(5/37)[중전의 17 재료(5/39)]의 173 단조·주조(4)란 및
175 도장·도금(6)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3 단조·주조 (3)		주조		주조	주조				
------------------	--	----	--	----	----	--	--	--	--

175 도장·도금 (5)					금속도 장				
	표면 처리	표면처 리		표면 처리	표면처 리				

별표 2의19 섬유·의복(2/17)의 192 의복(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2 의복(9)				신발					
					남성복				
					여성복				
					신발 제조 세탁				
				패션 디자인					
				패션 머천 다이징					
		한복			한복				

별표 2의 직무분야(26)란 중 “20 전기·전자(2/39)”를 “20 전기·전자(2/3

8)”로 하고, 같은 표의 20 전기·전자(2/38)[종전의 20 전기·전자(2/39)]의 202 전자(2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2 전자(22)			광학						
				광학 기기					
			로봇기 구개발						
			로봇소 프트웨 어개발						
			로봇하 드웨어 개발						
				반도체 설계					
	산업계 측제어								
			의공	의공					
					의료 전자				
			전자 계산기		전자 계산기				
				전자계 산기 제어					
		전자	전자	전자	전자				
			임베디드						
	전자 응용								
					전자 카드				
				3D프린 터개발					
					3D프린 터운용				

별표 2의22 식품가공(2/13)의 221 식품(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21 식품(7)	수산 제조		수산 제조						
	식품		식품안 전	식품					
					식품가 공				
			식육 가공						

별표 2의23 인쇄·목재·가구·공예(2/19)의 231 인쇄·사진(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31 인쇄·사진(5)					사진				
					전자출 판				
			인쇄설 계	디지털 인쇄	인쇄				

별표 7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전자출판”을 “전자출판, 인쇄설계, 디지털인쇄, 인쇄”로 한다.

별표 7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컴퓨터그래픽스운용”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웹디자인”을 “웹디자인개발”로 “동력기계정비”를 “선박기관정비”로 “전산응용조선제도”를 “선체설계”로 한다.

별표 7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란 중 “식품, 식품가공”을 “식품, 식품안전, 식품가공”으로 한다.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071 사회복지·종교(2)의 직업상담사1급 및 직업상담사2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직업상담사1급	필기시험	1. 직업심리 및 전직지원 2. 심층직업상담 및 수퍼비전 3. 직업정보가공 4. 노동시장분석 5. 고용노동관계법규(Ⅱ)
	실기시험	직업상담 및 전직지원 실무
직업상담사2급	필기시험	1. 직업심리 2. 직업상담 및 취업지원 3. 직업정보 4. 노동시장 5. 고용노동관계법규(Ⅰ)
	실기시험	직업상담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082 디자인(11)의 웹디자인기능사 및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웹디자인개발기능사	필기시험	웹디자인 구현, 웹페이지 제작
	실기시험	웹디자인 실무
컴퓨터그래픽기능사	필기시험	시각디자인 일반, 컴퓨터그래픽
	실기시험	컴퓨터그래픽 운용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42 토목(48)의 토목산업기사, 지도제작기능사, 도화기능사 및 항공사진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토목산업기사	필기시험	1. 구조설계 2. 측량 및 토질 3. 수자원설계
	실기시험	토목설계 및 시공 실무

지도제작기능사	실기시험	지도제작 실무
도화기능사	실기시험	도화 실무
항공사진기능사	실기시험	항공사진제작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45 건설 배관(3)의 배관산업기사 및 배관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배관산업기사	필기시험	1. 배관설비 제도 및 적산 2. 배관설비 3.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실기시험	배관시공 관리 실무
배관기능사	필기시험	배관시공 및 안전관리, 배관공작 및 재료, 배관제도
	실기시험	배관시공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46 건설기계운전(11)의 양화장치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및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양화장치운전기능사	필기시험	양화장치, 양화장구, 양화일반, 안전관리, 항만영어
	실기시험	양화장치운전 실무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시험	타워크레인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실기시험	타워크레인 조종 실무
기중기운전기능사	필기시험	기중기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실기시험	기중기 조종 실무

로더운전기능사	필기시험	로더 조종, 점검 및 안전관리
	실기시험	로더 조종 실무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필기시험	컨테이너크레인일반, 기계장치, 전기장치, 유압장치, 컨테이너터미널 실무, 안전관리
	실기시험	컨테이너크레인 운전 실무

별표 8의 직무분야(26)란 중 “16 기계(7/77)”를 “16 기계(7/75)”로 하고, 같은 표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61 기계제작(13)”을 “161 기계제작(12)”으로 하며, 같은 란 중 161 기계제작(12)[중전의 161 기계제작(13)]의 공유압기능사란을 삭제한다.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62 기계장비설비·설치(31)”를 “162 기계장비설비·설치(30)”로 하고, 같은 란 중 162 기계장비설비·설치(30)[중전

의 162 기계장비설비·설치(31)]의 설비보전기사, 설비보전기능사, 기계정비산업기사 및 승강기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중 162 기계장비설비·설치(30)[중전의 162 기계장비설비·설치(31)]의 기계정비기능사란을 삭제한다.

설비보전기사	필기시험	1. 공유압 및 자동제어 2. 용접 및 안전관리 3. 기계설비 일반 4. 설비진단 및 관리
	실기시험	설비보전 심화 실무
설비보전기능사	필기시험	기계구동장치, 공유압장치, 전기전자장치, 용접 및 안전관리
	실기시험	설비보전 기본 실무
설비보전산업기사	필기시험	1. 공유압 및 자동제어 2. 설비진단 및 관리 3. 기계보전, 용접 및 안전
	실기시험	설비보전 응용 실무

승강기기능사	필기시험	승강기 설치, 유지관리, 안전관리
	실기시험	승강기 설치 및 유지관리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63 철도(5)의 철도차량정비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차량정비기능사	필기시험	철도차량 유지보수
	실기시험	철도차량 유지보수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64 조선(7)의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및 동력기계정비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선체설계기능사	필기시험	조선일반, 선박건조, 선박구조 및 조선제도
	실기시험	선체설계 실무
선체건조기능사	필기시험	조선일반, 선박건조, 선박구조 및 조선제도
	실기시험	선체건조 실무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필기시험	선박기관정비, 선박전장정비, 선박배관정비, 안전보건환경관리
	실기시험	선박기관정비 실무

별표 8의 직무분야(26)란 중 “17 재료(5/39)”를 “17 재료(5/37)”로 하고, 같은 표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71 금속·재료(17)의 축로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축로기능사	필기시험	금속재료, 금속제도, 축로작업
	실기시험	축로작업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73 단조·주조(4)”를 “173 단조·주조(3)”로 하고, 같은 란 중 173 단조·주조(3)[종전의 173 단조·주조(4)]의 원형 기능사란을 삭제한다.

고용노동부령 제29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74 용접(7)의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란의 개정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피복아크용접기능사	필기시험	아크용접, 용접안전, 용접재료, 도면해독, 가스절단, 기타용접
	실기시험	피복아크용접 실무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필기시험	아크용접, 용접안전, 용접재료, 도면해독, 가스절단, 기타용접
	실기시험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실무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필기시험	아크용접, 용접안전, 용접재료, 도면해독, 가스절단, 기타용접
	실기시험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75 도장·도금(6)”을 “175 도장·도금(5)”으로 하고, 같은 란 중 175 도장·도금(5)[중전의 175 도장·도금(6)]의 광고도장기능사란을 삭제한다.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81 화공(9)의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및 화학분석기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화약류제조기사	필기시험	1. 공업합성 2. 단위공정관리 3. 화약류제조 4.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실기시험	화약류제조 실무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필기시험	1. 화학공업양론 및 단위조작 2. 화약류제조 3.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 법규
	실기시험	화약류제조 실무
화학분석기사	필기시험	1. 화학의 이해와 환경안전관리 2. 분석계획수립과 분석화학기초 3. 화학물질 특성분석 4. 화학물질구조 및 표면분석
	실기시험	화학분석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82 위험물(3)의 위험물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위험물산업기사	필기시험	1.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2.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3. 위험물 성상 및 취급
	실기시험	위험물취급 실무
위험물기능사	필기시험	위험물의 성질 및 안전관리
	실기시험	위험물취급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91 섬유(8)의 염색기능사(침염) 및 염색기능사(날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염색기능사(침염)	필기시험	섬유재료, 침염, 염색가공
	실기시험	침염작업 실무
염색기능사(날염)	필기시험	섬유재료, 날염, 염색가공
	실기시험	날염작업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192 의복(9)의 양복기능사 및 양장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남성복기능사	필기시험	의복재료, 의복디자인, 남성복 패턴, 남성복 생산
	실기시험	남성복 패턴 및 봉제작업 실무
여성복기능사	필기시험	의복재료, 의복디자인, 여성복 패턴, 여성복 생산
	실기시험	여성복 패턴 및 봉제작업 실무

별표 8의 직무분야(26)란 중 “20 전기·전자(2/39)”를 “20 전기·전자(2/38)”로 하고, 같은 표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01 전기(16)의 철도전기신호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철도전기신호기능사	필기시험	전기기초, 전기철도 시공 유지보수, 점검, 철도신호제어 시공 유지보수
	실기시험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제어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02 전자(23)”을 “202 전자(22)”으로 하고, 같은 란 중 202 전자(22)[중전의 202 전자(23)]의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및 전자기기기능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중 202 전자(22)[중전의 202 전자(23)]의 광학기능사란을 삭제한다.

로봇소프트웨어개발 기사	필기시험	1. 로봇 운영소프트웨어 2. 로봇 소프트웨어 구조설계 3. 모션 소프트웨어 4. 지능 소프트웨어
	실기시험	로봇소프트웨어개발 실무

전자기능장	필기시험	전자기기, 전자응용, 제어시스템, 전자공학,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전자기기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12 방송·무선(6)의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및 방송통신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방송통신기사	필기시험	1. 방송통신일반 2. 방송통신기기 3. 방송미디어공학 4. 방송통신시스템 5. 컴퓨터일반 및 방송설비기준
	실기시험	방송기술 실무
방송통신산업기사	필기시험	1. 방송통신일반 2. 방송통신기기 3. 방송미디어개론 4. 컴퓨터일반 및 방송설비기준
	실기시험	방송통신 실무
방송통신기능사	필기시험	전기전자개론, 컴퓨터일반, 방송통신일반, 방송설비기준
	실기시험	방송통신설비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21 식품(7)의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및 식품가공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식품안전기사	필기시험	1. 식품안전 2. 식품화학 3. 식품가공·공정공학 4. 식품미생물 및 생화학
	실기시험	식품안전관리 실무
식품산업기사	필기시험	1. 식품가공 2. 식품화학 3. 식품미생물 및 안전
	실기시험	식품품질관리 실무
식품가공기능사	필기시험	식품화학, 식품위생, 식품가공
	실기시험	식품가공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31 인쇄·사진(5)의 인쇄기사, 인쇄산업기사, 인쇄기능사 및 전자출판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인쇄설계기사	필기시험	1. 인쇄물 기획 2. 인쇄물 생산관리 3. 인쇄 제작 4. 인쇄 품질관리
	실기시험	인쇄설계 실무
디지털인쇄산업기사	필기시험	1. 프리프레스 2. 프레스 3. 인쇄물 후가공
	실기시험	디지털 인쇄작업 실무
인쇄기능사	필기시험	인쇄준비, 인쇄작업
	실기시험	인쇄작업 실무
전자출판기능사	필기시험	편집디자인, 편집, 출판물 제작
	실기시험	원고제작 및 출판작업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32 목재·가구·공예(5)의 보석가공기능사 및 보석감정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보석가공기능사	필기시험	보석일반 및 감별, 보석가공, 다이아몬드 감정
	실기시험	보석가공 실무

보석감정기능사	필기시험	보석일반 및 감별, 보석가공, 다이아몬드 감정
	실기시험	보석감정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41 농업(14)의 종자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및 유기농업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종자기능사	필기시험	종자생산, 재배, 육종
	실기시험	종자생산 실무

유기농업산업기사	필기시험	1. 재배 2. 토양비옥도 및 관리 3. 유기농업개론 4. 유기식품 가공·유통론
	실기시험	유기농업 생산, 품질인증 관련 실무
유기농업기능사	필기시험	유기 작물재배, 토양관리, 유기농업 일반
	실기시험	유기농산물 재배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42 축산(5)의 축산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축산기능사	필기시험	가축생산기술, 사료생산 및 이용, 축산농장경영
	실기시험	축산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43 임업(13)의 산림기능사, 식물보호기사, 임업종묘기능사 및 버섯종균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기능사	필기시험	조림 및 육림기술, 산림보호, 임업기계
	실기시험	산림작업 실무
식물보호기사	필기시험	1. 식물병리학 2. 농림해충학 3. 재배원론 4. 농약학 5. 잡초방제학
	실기시험	식물보호 실무

임업종묘기능사	필기시험	임업종묘 생산 및 관리
	실기시험	임업종묘 생산관리 실무

버섯종균기능사	필기시험	종균제조, 버섯재배
	실기시험	버섯종균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51 안전관리(27)의 가스기능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스기능사	필기시험	가스범령 활용, 가스사고 예방·관리, 가스시설 유지관리, 가스특성 활용
	실기시험	가스안전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52 비파괴검사(15)의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및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필기시험	1. 비파괴검사 일반 2. 금속재료 및 용접 3. 방사선비파괴검사 4. 방사선비파괴검사표준
	실기시험	방사선비파괴검사 실무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필기시험	1. 비파괴검사 일반 2. 금속재료 및 용접 3. 초음파비파괴검사 4. 초음파비파괴검사표준
	실기시험	초음파비파괴검사 실무
자기비파괴검사기사	필기시험	1. 비파괴검사 일반 2. 금속재료 및 용접 3. 자기비파괴검사 4. 자기비파괴검사표준
	실기시험	자기비파괴검사 실무
침투비파괴검사기사	필기시험	1. 비파괴검사 일반 2. 금속재료 및 용접 3. 침투비파괴검사 4. 침투비파괴검사표준
	실기시험	침투비파괴검사 실무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필기시험	1. 비파괴검사 일반 2. 금속재료 및 용접

사		3. 와전류비파괴검사 4. 와전류비파괴검사표준
	실기시험	와전류비파괴검사 실무
누설비파괴검사기사	필기시험	1. 비파괴검사 일반 2. 금속재료 및 용접 3. 누설비파괴검사 4. 누설비파괴검사표준
	실기시험	누설비파괴검사 실무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필기시험	1. 비파괴검사일반 및 방사선비파괴검사표준 2. 금속재료 및 용접 3. 방사선비파괴검사
	실기시험	방사선비파괴검사 실무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필기시험	1. 비파괴검사일반 및 초음파비파괴검사표준 2. 금속재료 및 용접 3. 초음파비파괴검사
	실기시험	초음파비파괴검사 실무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필기시험	1. 비파괴검사일반 및 자기비파괴검사표준 2. 금속재료 및 용접 3. 자기비파괴검사
	실기시험	자기비파괴검사 실무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필기시험	1. 비파괴검사 일반 및 침투비파괴검사표준 2. 금속재료 및 용접 3. 침투비파괴검사
	실기시험	침투비파괴검사 실무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시험	비파괴검사총론,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표준, 금속재료 및 용접
	실기시험	방사선비파괴검사 실무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시험	비파괴검사총론,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규격, 금속재료 및 용접
	실기시험	초음파비파괴검사 실무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시험	비파괴검사총론, 자기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표준, 금속재료 및 용접
	실기시험	자기비파괴검사 실무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필기시험	비파괴검사총론, 침투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표준, 금속재료 및 용접
	실기시험	침투비파괴검사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61 환경(22)의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및 환경기능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수질환경기사	필기시험	1. 수질오염개론 2. 상하수도계획 3. 수질오염방지기술 4.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실기시험	수질오염방지 실무

수질환경산업기사	필기시험	1. 수질오염개론 2. 수질오염방지기술 3.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실기시험	수질오염방지 실무

환경기능사	필기시험	대기오염방지,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소음 진동방지
	실기시험	환경오염공정 시험방법 실무

별표 8의 중직무분야(61)란 중 262 에너지·기상(13)의 기상기사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기상기사	필기시험	1. 기상관측법 2. 대기물리학 3. 대기운동학 4. 기후학 5. 일기분석 및 예보론
	실기시험	일기분석 및 예보 실무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	필기시험	태양광발전 구성, 시공, 운영 및 보수
	실기시험	태양광발전설비 실무

별표 9의제1호의 16 기계의 162 기계장비설비·설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건설기계정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궤도장비정비, 농업기계, 승강기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궤도장비정비, 승강기	공조냉동기계
---------------	--------	---	-----------------------------	--------

별표 9의제1호의 20 전기·전자의 202 전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2 전자	전자	광학, 의공, 전자 계산기, 임베디드, 로봇기구개발	광학기기, 의공, 3D프린터개발, 전 자계산기제어	의료전자, 전자계 산기
--------	----	------------------------------------	-----------------------------------	-----------------

별표 9의제1호의 22 식품가공의 221 식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21 식품		수산제조, 식품안 전, 식육가공		
--------	--	----------------------	--	--

별표 9의제1호의 23 인쇄·목재·가구·공예의 232 목재·가구·공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32 목재·가구· 공예		인쇄설계	가구제작	
------------------	--	------	------	--

별표 9의제1호의 24 농림어업의 243 임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43 임업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 묘	산림, 식물보호	
--------	--	-----------------------------	----------	--

별표 9의제1호의 26 환경·에너지의 262 에너지·기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2 에너지·기 상	에너지관리	원자력, 에너지관 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광)	에너지관리, 신재 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태양광)
----------------	-------	-------------------------------------	--------------------------------	---------------------

별표 9의제2호의 07 사회복지·종교의 071 사회복지·종교란을 다음과 같
이 한다.

071 사회복지·종교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	--------------------

별표 11의4의 임상심리사 1급 및 임상심리사 2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임상심리사 1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수련(학위를 취득하 기 전의 수련기간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취득 예 정자 2.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학위를 취득 하기 전의 종사 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 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취득 예정 자 3.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임상심리사 2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대학을 졸업하 기 전의 실습기간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졸 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2.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무에 종사(대학을 졸 업하기 전의 종사 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대학졸 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3.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별표 14의 육군의 종합군수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군수학교	차량야전정비중급	자동차정비기능사	실무부대주특기 심화교육 포함
	차량운용초급	자동차정비기능사	
	물자취급장비운전병	지게차운전기능사	
	대공포야전정비병	전자기능사	
	용접/기계공작병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텅스텐아 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 용접기능사	
	차량부대정비병	자동차정비기능사	
	차량야전정비초급	자동차정비기능사	
	공병장비야전정비초급	건설기계정비기능사	
	대공포야전정비 초급	전자기능사	
	유도무기야전정비 초급	전자기능사	
	특수통신야전정비 초급	전자기능사	
	탄약관리 초급 · 탄약관리 중급	화약취급기능사	초급반 및 중급반 모두 이수 시 면제

별표 14의 해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 군	기술행정학교	자동차정비 초급	자동차정비기능사	초급반 및 중급반 모두 이수 시 면제
		전기 초급	전기기능사	
		보수 초급 · 중급	피복아크용접기능사	
		한식조리	한식조리기능사	
		추기초급반	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해난구조전대	해난구조기본	잠수기능사	
	609교육훈련전대	항공기체/기관 초급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기체/기관 중급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전자 초급	항공전기 · 전자정비기능 사	
		항공전자 중급	항공전기 · 전자정비기능 사	

별표 14의 공군의 군수1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 1학교	항공기기체정비 부사관 초급	항공기정비기능사
	항공기제작정비 부사관 초급	피복아크용접기능사
	정밀측정장비정비 부사관초급	전자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별표 14의 공군의 군수2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 2학교	전력운영병	전기기능사
	항공설비병	에너지관리기능사
	기지건설장비운전병	굴착기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항공시설부서관조급	굴착기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별표 16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면접위원	- 해당 직무분야의 박사학위,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전문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종사 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종사 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또는 기능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종사 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훈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종사 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 미용사 종목의 경우에는 미용사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종사 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고등학교에서 해당분야의 교사로 재직중인 사람 - 해당 분야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훈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 해당 분야의 1급 이상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종사 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

	사람 8. 해당 직무분야의 관련 학과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대학을 졸업하기 전의 종사 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9.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시험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미용사(일반) 종목은 제외한다] 10. 일반직공무원 중 기술직렬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11. 군의 장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8. 군의 장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별표 16의 작업형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및 관리위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작업형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및 관리위원	1. 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종사 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2. 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종사 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3. 직업훈련교사 4.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대학을	1. 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종사 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2. 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종사 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3. 직업훈련교사 4.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대	1. 해당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종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종사 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2. 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 3. 직업훈련교사 4.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	---	---

	졸업하기 전 또는 학력이 인정되기 전의 종사 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5.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대학을 졸업하기 전 또는 학력이 인정되기 전의 종사 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6. 그 밖에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을 졸업하기 전 또는 학력이 인정되기 전의 종사 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5.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대학을 졸업하기 전 또는 학력이 인정되기 전의 종사 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6. 그 밖에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	--

별표 19의16. 기계의 164 조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4 조선	조선기술사·산업기사, 조선선체기사, 조선의장기사, 선박기관정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	--

별표 19의22. 식품가공의 221 식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21 식품	수산제조기술사·기사, 식품기술사·산업기사, 식품안전기사, 식품가공기능사
--------	---

별표 20의 제1호의 14 건설의 142 토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2 토목	토목, 잠수, 콘크리트
--------	--------------

별표 20의 제2호의 14 건설의 142 토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2 토목	잠수, 측량, 콘크리트, 항공사진
--------	--------------------

별표 20의 제2호의 16 기계의 164 조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4 조선	선박기관정비
--------	--------

별지 제15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본인 :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전에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사람은 제외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사진 1장(전자파일 형태를 포함합니다), 변경사항 증명서류(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 대리인 : 본인의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고용노동부령 제293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부칙의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2022년 12월 31일까지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특수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 교육훈련·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후 해당 자격종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수용접기능사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가.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토목산업기사, 피복아크용접기능사, 가스 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화학분석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 및 기상기

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나.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식물보호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식물보호산업기사 및 에너지관리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2. 별표 2,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전자기기기능장 및 전자기능장의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2024년 1월 1일

3.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원형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광학기능사, 공유압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웹디자인개발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컴퓨터그래픽기능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설비보전산업기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선체설계기능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선박기관정비기능사, 양복기능사, 남성복기능사, 양장기능사, 여성복기능사, 식품기사, 식품안전기사, 인쇄기사, 인쇄설계기사, 인쇄산업기사 및 디지털인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나.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웹디자인기능사, 웹디자인개발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컴퓨터그래픽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선체설계기능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선박기관정비기능사, 식품기사 및 식품안전기사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다.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원형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광학기능사,

공유압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 웹디자인기능사, 웹디자인개발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컴퓨터그래픽기능사, 지도제작기능사, 도화기능사, 항공사진기능사, 배관산업기사, 배관기능사, 양화장치운전기능사,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기중기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설비보전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설비보전산업기사, 승강기기능사, 철도차량정비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선체설계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선박기관정비기능사, 축로기능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염색기능사(침염), 염색기능사(날염), 양복기능사, 남성복기능사, 양장기능사, 여성복기능사,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식품기사, 식품안전기사, 식품산업기사, 식품가공기능사, 인쇄기사, 인쇄설계기사, 인쇄산업기사, 디지털인쇄산업기사, 인쇄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보석가공기능사, 보석감정기능사, 종자기능사, 유기농업기능사, 축산기능사, 산림기능사, 임업종묘기능사, 버섯종균기능사, 가스기능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라.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직업상담사1급, 설비보전기사, 식품기사, 식품안전기사 및 인쇄설계기사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마. 별표 14의 개정규정 중 광학기능사 국가기술자격종목과 관련된 규정

바. 별표 19의 개정규정 중 동력기계정비기능사, 선박기관정비기능사, 식품기사 및 식품안전기사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사. 별표 20의 개정규정 중 동력기계정비기능사 및 선박기관정비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관련된 규정

제2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설비보전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공유압기능사	

②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전자기기기능장	전자기능장
---------	-------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③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웹디자인기능사	웹디자인개발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컴퓨터그래픽기능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설비보전산업기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선체설계기능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선박기관정비기능사
양복기능사	남성복기능사
양장기능사	여성복기능사
식품기사	식품안전기사
인쇄기사	인쇄설계기사
인쇄산업기사	디지털인쇄산업기사

④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른 표의 왼쪽란에 적힌 국가기술 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에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적힌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를 적용한다.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형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또는 광학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까지 원형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또는 광학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원형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또는 광학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11의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 21조를 적용한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소관 주무부장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쇄기사, 인쇄산업기사 및 인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계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쇄기사, 인쇄산업기사 및 인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행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2024년 1월 1일부터 전자기기기능장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2024년 1월 1일 전에 전자기기기능장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2025년 1월 1일부터 기계정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계하고, 2025년 1월 1일 전에 기계정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행위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